투자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라이프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라이프Voyager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프Voyager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라이프Voyager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라이프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매회사 :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investlife.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 2026년 10월 15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6년 11월 13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 수익증권 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이 투자신탁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모집을 개시하며,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02-6105-7070, www.investlife.com)
한국금융투자협회(02-2003-9000, www.kofia.or.kr)
각 판매회사 본·지점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프자산운용 LIFE Asset Management

목 차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요약정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2부 별첨 피투자펀드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과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투자경력 및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히 판단하신 후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판매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으니, 실제 투자되는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 총수가 법령에서 정하는 1인이 되는 경우 해당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의 투자의사와는 관계없이 해당 투자신탁이 해지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

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는 레버리지전략(적은 금액으로 투자금액 이상의 높은 변동성을 추구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분산투자 규제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운용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공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투자결과에 따른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3. 이 투자신탁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는 공모집합투자기구에서 적용되는 공시 의무 등이 법령상 배제되어 운용과 관련된 정보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물론 공모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일반적인 재간접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회비용과 투자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14.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는 운용보수 이외에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성과보수가 부과되므로 성과보수를 채택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 대비 더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성과보수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의 예상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이 실현될 수 있으며, 성과보수를 채택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것보다 실현되는 수익률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15.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는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공정가치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자산평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산정한 공정가치가 시장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은 불완전한 상태로 산정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도 불완전한 상태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환매청구 시점, 기준가격 적용일 및 환매대금 지급일 간의 기간이 오랜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환매청구 시점 대비하여 환매대금 변동이 클 수 있습니다.

16.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자산의 유동성 제약 등을 이유로 환매청구 시점부터 환매대금 지급일까지의 환매주기가 오랜 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이 투자신탁의 환매주기도 일반적인 투자신탁보다 길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간 내에 투자자금을 유동화하기 원하는 고객이나, 오랜 환매기간 동안 발생될 수 있는 가치변동 위험을 원치 않는 고객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기 원하는 고객께서는 장기간의 환매주기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지 고려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7.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해당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이하 "피투자펀드")에서 발생한 위험이 이 투자신탁에 전이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피투자펀드에서 발생한 위험이 이 투자신탁에 전이될 위험이 높습니다.

18. 이 투자신탁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라이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합니다. 이에 따라 피투자펀드 간 투자종목·운용철학이 중복될 수 있고, 집합투자업자 고유의 위험(운용인력 이탈, 내부통제 실패 등)이 투자신탁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피투자펀드 선정·비중 결정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의 이해상충 관리체계는 제2부 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일부는 총수익스왑(TRS) 등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운용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결제 불이행 위험, 레버리지에 따른 손실 확대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 급변, 거래소의 거래정지 또는 폐쇄 등으로 인해 자산 처분 및 환매 대응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은 이 투자신탁에 귀속됩니다.

20.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보수·비용과 피투자펀드에서 발생하는 보수·비용(성과보수 포함)을 이중으로 부담합니다.

21.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작성하고 자산보관·관리회사인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은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판매회사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으며, 수시공시(dis.kofia.or.kr)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펀드의 운용에 관한 정보 등이 필요하신 경우 가입하신 판매회사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면, 법령 및 집합투자업자 내부통제규정 등에 따라 제공 가능한 범주 내에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22.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인 라이프자산운용은 과거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으므로, 투자자는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2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 약 정 보

작성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라이프Voyager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펀드코드: F1135]

투자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라이프자산운용㈜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공모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운용 규제를 적용 받지 않기에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운용위험, 동일 집합투자업자 집중위험, 성과보수 적용펀드 투자위험, 투자신탁 해지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라이프Voyager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합니다)의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서로 다른 투자전략(가치성장형, 행동주의(인게이지먼트), 가치성장혼합형, 절대수익추구형(롱숏), 멀티스트레티지 등)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분산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각 투자전략의 역할에 따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별 투자비중을 배분하고 시장 상황 및 운용성과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하며, 환매 대응 및 유동성 관리를 위하여 채권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현금성 자산 등을 일부 편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비교지수: 없음 (다양한 전략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특성상 비교 가능한 지수가 없음)
분류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사모투자재간접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단위: 천원)				
	판매 수수료	총 보수	판매 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200%	0.500%	0.450%	0.830%	1.517%	274	433	597	943	1,91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없음	0.950%	0.900%	1.160%	1.967%	202	409	623	1,070	2,310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600%	0.275%	0.225%	0.560%	1.292%	192	328	470	768	1,617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0.500%	0.450%	0.730%	1.517%	156	316	483	833	1,820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 A와 종류 C, 종류 A-e와 종류 C-e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총보수·비용은 이 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에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투자비율만큼 안분하여 포함한 비율(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이며,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성과보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4)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2026년 9월 30일 기준, 재간접형)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해당사항 없음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사모투자재간접형)(%)				운용경력 년수
			집합투자기구 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강대권	1980	책임 (공동대표)	73	39,722	-	-	-	-	18년 7개월

<table>
<tr><td></td><td>
<table>
<tr><td>이대상</td><td>1981</td><td>부책임
(상무)</td><td>73</td><td>39,722</td><td>-</td><td>-</td><td>-</td><td>-</td><td>11년
10개월</td></tr>
</table>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기준일 : 2026년 10월 15일
</td></tr>
<tr><td>투자자 유의사항</td><td>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d></tr>
<tr><td>주요투자위험</td><td>
<table>
<tr><th>구분</th><th>투자위험의 주요내용</th></tr>
<tr><td>원본손실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투자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라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td></tr>
<tr><td>가격변동위험</td><td>이 투자신탁 또는 피투자펀드의 투자대상자산은 국내외의 경제, 정치, 사회, 자연현상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아 가격변동 위험을 수반하며,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피투자펀드의 운용구조, 투자성과, 보수, 거래비용 등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td></tr>
<tr><td>주식가격 하락위험</td><td>피투자펀드는 국내외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므로 시장 전체의 변동 또는 개별기업의 실적 변화 등에 따른 주가 하락 위험을 부담하며, 중소형주·저평가 가치주 비중이 높아 시장 대비 가격 변동이 클 수 있습니다.</td></tr>
</table>
</td></tr>
</table>

사모투자재간접 투자위험	피투자펀드는 개별적인 운용전략과 포트폴리오로 운용되며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어, 직접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피투자펀드의 기준가격이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하며, 피투자펀드에서 발생한 위험이 이 투자신탁에 그대로 전이됩니다.
동일 집합투자업자 집중위험	피투자펀드는 모두 라이프자산운용이 운용하므로 투자철학·종목이 중복될 수 있어 운용사 분산 효과가 없으며, 핵심 운용인력 이탈·내부통제 실패·제재 등 집합투자업자 고유의 위험이 이 투자신탁과 모든 피투자펀드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해상충 위험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피투자펀드를 선정·평가하고 비중을 결정하므로, 피투자펀드의 보수 수취·규모 유지 등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가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투자펀드의 다른 투자자와 이 투자신탁 투자자 간 이해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관련 위험	피투자펀드는 레버리지전략과 TRS·차입매도(숏)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공모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운용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적용 배제되는 주요 운용규제> 동일종목 증권 투자제한(10%), 동일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 투자제한(50%), 동일 집합투자증권 투자제한(20%, ETF 30%), 동일 집합투자증권 총수 제한(20%),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제한(100%), 증권 대여(50%)·차입제한(20%)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정보접근 제약 위험	피투자펀드는 공시 의무를 적용받지 않아 상품 및 운용 관련 정보 접근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의사결정 시 제약이 발생하고 공모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것보다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준가격 관련 위험	피투자펀드는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한 공정가치로 평가되어 시장가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과 피투자펀드의 집합투자업자가 동일하여 평가의 독립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도 불완전한 상태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성과보수 적용펀드 투자위험	피투자펀드는 운용실적에 연동한 성과보수를 부과하므로, 성과보수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의 예상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이 실현될 수 있고 실현 수익률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다중비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피투자펀드에 투자하여 목표하는 포트폴리오를 간접적으로 구성하므로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피투자펀드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합니다. 이로 인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궁극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전체비용이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롱숏·장외파생상품 위험	피투자펀드의 차입매도·TRS 등 매도 포지션은 헤지 효과가 불충분하거나 매수·매도 양쪽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숏 스퀴즈 시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상대방 결제불이행과 레버리지에 따른 손실 확대 위험이 있습니다.
환매주기 관련 위험	피투자펀드의 환매주기를 반영하여 이 투자신탁의 환매대금은 청구일부터 7영업일에 지급됩니다. 단기간 내 유동화를 원하거나 환매기간 동안의 가치변동 위험을 원치 않는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able>
<tr><td></td><td>
<table>
<tr><td>유동성위험</td><td>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피투자펀드가 투자하는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피투자펀드는 투자대상자산의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환금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피투자펀드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 적시에 환매에 응할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투자신탁 해지위험</td><td>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설정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1년(또는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td></tr>
</table>
※ 상기 위험은 주요 투자위험을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투자위험은 투자설명서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d></tr>
<tr><td>매입방법</td><td>17시 이전 자금납입: 납입일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17시 경과 후 자금납입: 납입일로부터 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td><td>환매방법</td><td>17시 이전 환매청구: 청구일로부터 5영업일 기준가격 적용, 7영업일 환매대금 지급
17시 경과 후 환매청구: 청구일로부터 6영업일 기준가격 적용, 8영업일 환매대금 지급</td></tr>
<tr><td>환매수수료</td><td>없음</td><td>전환절차 및 방법</td><td>해당사항 없음</td></tr>
<tr><td>기준가</td><td>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산정방법</td><td>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td></tr>
<tr><td>공시장소</td><td>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investlife.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td></tr>
</table>
</td></tr>
<tr><td>과세</td><td>
<table>
<tr><th>구분</th><th>과세의 주요내용</th></tr>
<tr><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td></tr>
<tr><td>수익자</td><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됩니다.</td></tr>
</table>
-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 및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과세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d></tr>
</table>

<table>
<tr><td>집합투자업자</td><td colspan="3">라이프자산운용㈜ (대표번호: 02-6105-7070 / 인터넷 홈페이지: www.investlife.com)</td></tr>
<tr><td>모집기간</td><td>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td><td>모집·매출 총액</td><td>10조좌</td></tr>
<tr><td>효력발생일</td><td>2026년 11월 13일</td><td>존속기간</td><td>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td></tr>
<tr><td>판매회사</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www.investlife.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참고</td></tr>
<tr><td>참조</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집합투자기구의 종류</td><td colspan="3">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r><th colspan="2">종류(Class)</th><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tr>
<tr><td rowspan="2">판매수수료</td><td>수수료선취(A)</td><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 이전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수수료미징구(C)</td><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 이전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 rowspan="2">판매경로</td><td>온라인(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td>오프라인</td><td>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tr>
<tr><td rowspan="5">기타</td><td>무권유저비용(G)</td><td>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기관 및 고액(I)</td><td>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및 기금 또는 일정금액 이상을 매입하는 고액거래자가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집합투자업자(C-S)</td><td>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에게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랩(W)</td><td>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Wrap Account)를 보유한 자 또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개인연금(P)</td><td>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able>
</td></tr>
</table>

		퇴직연금 (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investlife.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investlife.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investlife.com)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종류)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라이프Voyager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F1135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F1136
수수료선취-온라인(A-e)	F1137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F113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F1139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F114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F114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및 고액(C-I)	F114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집합투자업자(C-S)	F114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F114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F1145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F114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F1147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집합투자기구(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

- 종류형 :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합니다) 또는 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최초 설정시 1좌당 1원)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50억원)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 및 모집(판매) 예정기간은 예정보다 줄거나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정신고서 제출 등 법령상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하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모집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모집을 개시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의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investlife.com)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종류)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라이프Voyager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F1135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F1136
수수료선취-온라인(A-e)	F1137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F113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F1139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F114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F114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및 고액(C-I)	F114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집합투자업자(C-S)	F114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F114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F1145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F114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F1147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시행일	주요내용
2026년 11월 13일	최초설정(예정)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주1)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2) 관련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신탁계약상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구분	내용
회사명	라이프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wo IFC 14층 02)6105-7070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2026.10.15 현재)

(1)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사모투자재간접형, 단위: %)				운용경력년수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단위: 개)	운용자산규모 (단위: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강대권	1980	공동대표이사	73	39,722	-	-	-	-	18년 7개월

이력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펀드 수 (단위: 개)	운용규모 (단위: 억원)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석사 - 2007.12~2014.02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주식운용 - 2014.02~2021.02 유경PSG자산운용 주식운용(CIO) - 2021.06~현재 라이프자산운용 공동대표이사	63	33,776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사모투자재간접형, 단위: %)				운용경력년수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단위: 개)	운용자산규모 (단위: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이대상	1981	상무 (운용1본부장)	73	39,722	-	-	-	-	11년 10개월

이력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펀드 수 (단위: 개)	운용규모 (단위: 억원)
- 서울대학교 경영학 - 2005.03~2007.05 와이즈에프엔 - 2007.05~2008.06 지안리서치 - 2008.06~2009.12 현대차증권 주식운용본부 - 2009.12~2014.11 대신증권 주식운용본부 - 2014.11~2018.05 브레인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 2018.06~2021.05 유경PSG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 2021.06~현재 라이프자산운용 운용1본부장	63	33,776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운용1본부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당사의 펀드운용은 본부 및 팀별로 운용하고 있고,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운용전문인력 및 당사 동종집합투자기구의 운용기간이 1년 또는 2년 이하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이 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은 피투자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겸하고 있습니다. 운용현황은 작성기준일 현재 이 투자신탁을 제외하고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와 운용펀드 기준 순자산을 합산한 규모입니다. 당사는 본부 단위로 운용하고 있어, 운용전문인력의 운용현황은 운용1본부가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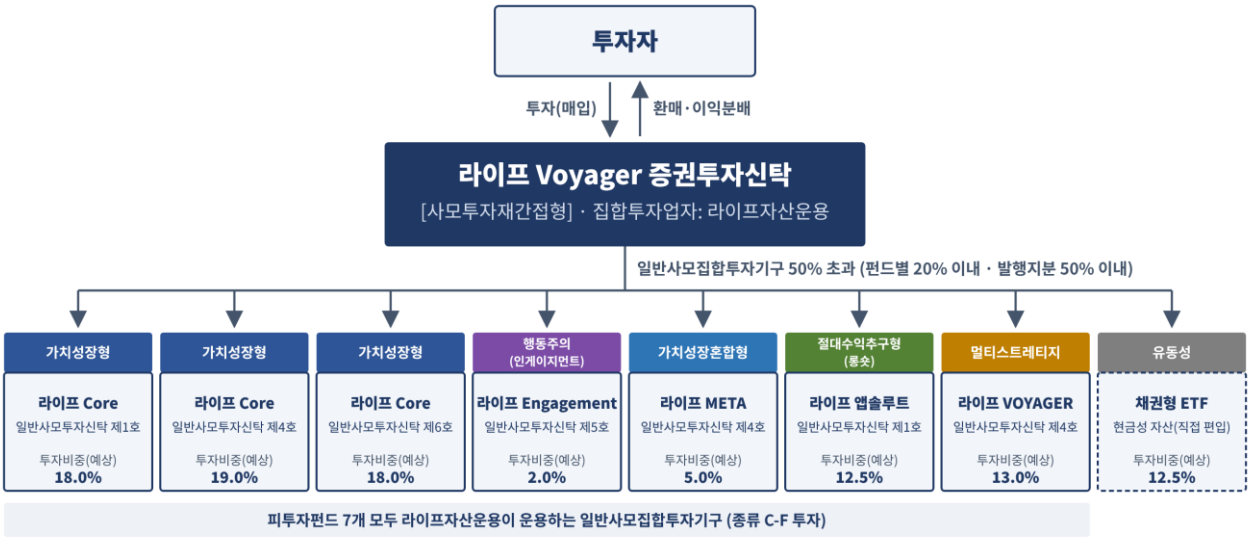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해당사항 없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구조도>



※ 투자비중은 작성기준일(2026.10.15) 현재 예시이며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META 4호는 2026.10.20 설정 예정입니다.

나. 종류형 구조 :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 이전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 이전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기타	무권유저비용 (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 및 고액 (I)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및 기금 또는 일정금액 이상을 매입하는 고액거래자가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업자 (C-S)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에게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Wrap Account)를 보유한 자 또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주1) 종류별 가입자격의 자세한 사항은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의 종류별 가입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각 종류별로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합니다)의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초과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사모투자재간접형) 투자신탁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인 라이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합니다.

[피투자펀드의 투자 필요성 및 선정기준]

- 이 투자신탁은 공모펀드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주주협력주의(인게이지먼트), 롱숏, 멀티스트레티지 등 서로 다른 전략을 사모펀드 가입요건 없이 하나의 펀드로 분산투자하기 위하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합니다.
- 피투자펀드는 모두 라이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시장에서 유동성이 높은 국내외 상장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고 환매주기가 이 투자신탁의 환매주기 내에서 대응 가능한 펀드 위주로 선별하여 투자합니다.
- 피투자펀드는 운용본부 등의 내부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내용
① **집합투자증권**	50% 초과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법 제234조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합니다). 다만, 그 중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합니다)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초과로 합니다.
② **주식**	50% 미만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합니다)
③ **채권**	50% 미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사채권(취득 시점 기준 신용평가등급이 **A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 주식관련사채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또는「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합니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유동화를 목적으로 발행된 단기사채를 포함하며, 취득 시점 기준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합니다)
④ **자산유동화증권**	50% 미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⑤ **어음 등**	50% 미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점 기준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점 기준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합니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내용
⑥ 파생상품	순자산총액의 10% 이하(위험평가액 기준)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⑦ 환매조건부 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⑧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 이하	-
⑨ 증권의 차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
⑩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 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합니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합니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투자한도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투자대상 ①내지 ⑤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간 2.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회계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3.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 투자대상 ①내지 ⑤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기 투자대상 ⑥내지 ⑨ 및 "나. 투자제한" ③내지 ⑥(③의 라목은 제외합니다)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투자한도의 예외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 "나. 투자제한" ④ 동일종목 투자(본문), ③ 집합투자증권 투자의 가목 및 나목, ⑥ 파생상품 매매의 규정은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상기 투자대상 ③ 및 ⑤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주1)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증권의 대여 :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의 대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의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3) 증권의 차입 : 효율적 운용, 보유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의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주요내용	적용예외
① 이해관계인과 거래 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②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③ 집합투자증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합니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사모투자재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간(가·나)

구분	주요내용	적용예외
	간접집합투자기구는 같은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합니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이 예외를 적용하여 라이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합니다.**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제2항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합니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합니다) 또는 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를 포함합니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구분	주요내용	적용예외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④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예금,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합니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나.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상기 "가"의 것은 제외합니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같은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합니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같은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시가총액비중은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자산총액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간
⑤ 동일회사 발행 지분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⑥ 파생상품 매매	가.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의 100%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간(가~다)

구분	주요내용	적용예외
	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나.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라.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⑦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행위	-
⑧ 후순위채권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투자한도 초과	투자한도를 불가피하게 초과하게 되는 경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상기 "가. 투자대상"의 [투자한도의 예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라이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므로 피투자펀드에서 발생한 위험이 이 투자신탁에 전이될 위험이 높습니다.

(주) 피투자펀드의 투자대상, 투자전략, 기준가 산정방법 등에 관한 내용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가) 기본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자산총액의 50% 초과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인 라이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가치성장형, 행동주의(인게이지먼트), 가치성장혼합형, 절대수익추구형(롱숏), 멀티스트레티지 등 서로 다른 전략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분산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며, 개별 피투자펀드는 자산총액의 20% 이내로 편입합니다.

- 단순 보유가 아닌 시장모니터링(금리, 경기, 수급, 정책 등)으로 시장국면(상승장, 조정장, 하락장 등)을 판단하고, 전략별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할 예정입니다.
- 이 투자신탁은 환매 대응 및 유동성 관리를 위하여 채권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현금성 자산 등 집합투자증권 외 다른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 투자전략(피투자펀드 선정 기준 및 관리 프로세스)

① 투자 유니버스 구성

이 투자신탁은 라이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중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펀드로서,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외 상장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고 환매대금 지급 일정이 이 투자신탁의 환매 일정 내에서 대응 가능한 펀드로 투자 유니버스를 구성합니다.

② 정량분석 및 평가

피투자펀드에 대하여 다음 항목을 고려하여 정량데이터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항목	평가내용
운용규모	피투자펀드 설정액·순자산, 이 투자신탁의 편입 가능액(발행지분 50% 한도) 등
운용성과	연환산 수익률, 변동성, 최대낙폭(MDD), 샤프비율 등
위험노출	주식 편입비, 베타, 순노출도, 레버리지·파생상품 위험평가액 등
유동성	환매주기, 보유자산의 유동성, 대량환매 시 대응 가능 규모 등
보수	운용보수, 성과보수(기준수익률·HWM 적용 여부) 등

③ 정성분석 및 평가

피투자펀드의 운용전략, 운용인력, 위험관리 방안 등을 확인, 평가합니다.

평가항목	평가내용
운용전략	포트폴리오 내 역할, 다른 피투자펀드와의 전략·종목 중복도 등
운용인력	담당 운용인력의 경험·전문성, 인력 변동 등
리스크관리	운용지침 준수, 유동성·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 컴플라이언스 이슈 등

④ 최종 포트폴리오 구성 및 관리

서로 다른 전략과 조건을 가진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되, 피투자펀드 규모와 발행지분 50% 한도를 감안하여 비중을 결정합니다. 피투자펀드별 주식 노출도·섹터 비중·베타·MDD와 전략 간 중복도·집중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기적인 성과분석 및 리밸런싱으로 수익률 최적화를 추구할 예정입니다. 가격변동으로 개별 피투자펀드 비중이 20%를 초과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조정하며, 시장환경 변화 및 특이사항 발생 시 편입 비중 조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시장환경에 따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예시]

구분	환경 신호	주요 전략
상승 트렌드 국면	시장 내 명확한 성장 트렌드와 주도 업종이 형성되어 시장과 산업의 구조적 성장이 확인되는 국면	가치성장 전략 등 시장과 산업의 구조적 성장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액티브 전략
변동성 확대 국면	시장의 상승 방향성이 약화되거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	롱숏 전략 및 채권/유동성 등 방어적 포지션을 취하는 위험관리 전략
불확실성 확대 국면	시장 환경이나 기업 펀더멘털에 변화가 발생하는 변곡점 국면	지배구조 개선, 신사업 등 주가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기업별 이벤트에 주목하여 기업가치 제고 가능성을 발굴하는 인게이지먼트 전략

다) 피투자펀드에 관한 사항

[피투자펀드 유니버스 및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 (작성기준일: 2026.11.10, 투자비중 단위: %)

전략	펀드명	주요 투자대상 및 투자전략	종류	설정일	운용규모 (억원)	투자비중 (예상)
가치성장형	라이프 Core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투자대상] 국내 상장주식, ETF, 장내파생상품 [투자전략] 주식 편입비중 탄력 조절(Asset-Allocation)과 가치주·성장주·모멘텀 종목 선택(Stock-Picking) 병행	증권 (주식)	2021.06.28	410	19.1
	라이프 Core 일반사모투자신탁 제4호	[투자대상] 국내 상장주식, ETF, 장내·장외파생상품 [투자전략] 주주환원·중소형주·성장주·이벤트 드리븐 등 Active 전략, M&A·기업분할 등 재평가 계기 종목 투자	혼합자산	2025.09.05	827	19.5
	라이프 Core 일반사모투자신탁 제6호	[투자대상] 국내 상장주식, ETF, 장내·장외파생상품 [투자전략] 주주환원 확대 가능 기업·중소형 가치주·성장 모멘텀·기업 이벤트 종목 투자, 현금성 자산 조정으로 변동성 관리	혼합자산	2026.04.30	542	19.0
행동주의 (인게이지먼트)	라이프 Engagement 일반사모투자신탁 제5호	[투자대상] 국내 상장주식, ETF, 장내파생상품, 현금성 자산 [투자전략] 저평가 기업에 5% 미만 지분의 주주로 참여하여 자본효율성·주주환원 개선을 제안하는 주주협력주의 전략	혼합자산	2024.10.07	79	2.0
가치성장 혼합형	라이프 META 일반사모투자신탁 제4호	[투자대상] 국내 상장주식, ETF, 채권, 장내파생상품, 주식차입매도 [투자전략] 재평가 촉매 보유 저평가 종목·구조적 성장 기업 투자, Long/Short·Event-driven 활용, 채권으로 변동성 관리	혼합자산	2026.10.20	50	2.5
절대수익 추구형(롱숏)	라이프 앱솔루트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투자대상] 국내 상장주식, ETF, 장내·장외파생상품, 증권차입 [투자전략] 주주환원·중소형주·성장주·이벤트 드리븐 등 Active Long-Biased 전략, 현금성 자산으로 변동성 대응	혼합자산	2026.06.12	251	12.5

전략	펀드명	주요 투자대상 및 투자전략	종류	설정일	운용규모 (억원)	투자비중 (예상)
멀티 스트레티지	라이프 VOYAGER 일반사모투자신탁 제4호	[투자대상] 국내외 상장주식, ETF, REITs, 메자닌, 채권, 장내 파생상품 [투자전략] 가치투자 기반 글로벌 자산배분, Long/Short·Global Macro로 변동성을 낮춘 절대수익 추구	혼합자산	2026.02.10	384	13.0
유동성	채권형 ETF·현금성 자산	이 투자신탁에서 직접 편입하여 환매 대응	-	-	-	12.4

※ 피투자펀드는 모두 라이프자산운용이 운용하며, 환매조건은 T+2 기준가 적용, T+4 지급입니다. 환매청구 마감시간은 VOYAGER 4호가 17시, 나머지 6개 펀드가 15시 30분이며, 마감시간 이후 청구 시 기준가 적용일 및 지급일이 1영업일씩 순연됩니다.

※ 각 피투자펀드에 대한 투자비중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내이며, 운용규모는 2026.11.10 순자산 기준입니다.

※ 피투자 지분 50% 한도로 인해 각 피투자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피투자펀드 규모에 의해 제한됩니다.

※ 상기 피투자펀드 유니버스 및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는 작성기준일 현재 예시로서 초기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을 기재하였습니다. 실제 운용과정에서 시장상황, 피투자펀드의 운용규모 및 운용상황 등에 따라 피투자펀드를 변경 또는 추가하여 유니버스 및 포트폴리오를 예고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투자비중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피투자펀드의 펀드 개요]

※ 아래 투자대상·투자전략은 각 피투자펀드 제안서(펀드 개요) 기준이며, 보수·성과보수·관련회사 정보는 각 피투자펀드 신탁계약서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1) 라이프 Core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구분	내용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증권형(주식),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설정일	2021년 6월 28일
투자대상	·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및 ETF, 장내 파생상품(헤지목적의 파생상품) · RP 등 단기금융상품 (레버리지 한도: 200% 이내)
투자전략	[탄력적 주식 편입비 조절 – Asset-Allocation] · 절대적 투자기준에 부합되는 종목이 많을 경우, 100%까지 주식비중 확대 / 매력적인 투자기회가 관측되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0%까지 주식비중 조절 · 초기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수동적(Passive)으로 시장 추세를 추종하며 투자수익이 나기를 기다리는 방식 지양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td><td>· 투자기회 유무에 따라 펀드내 주식편입비중을 0~95% 사이로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수익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기회가 포착될 때에 집중
· 종목 포트폴리오와 시간(Time) 포트폴리오 효과 동시 추구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한 종목 선택 – Stock-Picking]
·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단일한 투자기준을 고집하기 보다는 유연한 투자전략 적용
· 저평가 가치주(Value), 중장기 성장기업(Growth), 시장 관심이 집중되는 상승모멘텀종목(Momentum)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 각 유형별 비중을 퀀트분석/벨류에이션/산업전망/매크로경제 분석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td></tr>
<tr><td>투자신탁 계약기간</td><td>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td></tr>
<tr><td>회계기간</td><td>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 1년간</td></tr>
<tr><td>회계감사</td><td>회계기간(1년) 말일 및 투자신탁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2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td></tr>
<tr><td>투자신탁보수
(성과보수 내용 포함)</td><td>·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판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투자신탁 보수(연, 순자산총액 기준, %)
<table>
<tr><th>구분</th><th>총보수</th><th>판매회사</th><th>집합투자업자</th><th>신탁업자</th><th>사무관리회사</th></tr>
<tr><td>종류 C-F</td><td>1.09</td><td>0.01</td><td>1.00</td><td>0.04</td><td>0.04</td></tr>
</table>
· 성과보수 : 환매 또는 이익분배 시 초과수익의 20%.
· 산식 : MAX[(성과보수계산기간 말일의 투자신탁 평가액 – Hurdle 금액) × 성과보수율(20%), 0]
* Hurdle 금액 : 취득가액 × (1 + Hurdle Rate(0%))</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라이프자산운용</td></tr>
<tr><td>신탁업자</td><td>KB증권</td></tr>
<tr><td>사무관리회사</td><td>KB펀드파트너스</td></tr>
</table>

(2) 라이프 Core 일반사모투자신탁 제4호

구분	내용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혼합자산,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설정일	2025년 9월 5일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투자대상</td><td>· 국내 상장주식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인버스, 레버리지 포함)
· 장내파생상품(주가지수 선물, 주식 선물)
· 장외파생상품(TRS 포함)
· 현금성(MMF, RP 등 포함)자산
(레버리지 한도: 100%)</td></tr>
<tr><td>투자전략</td><td>· 국내 상장 종목을 대상으로 주주환원, 중소형주, 성장주, 이벤트 드리븐 등 다양한 Active 전략을 활용하여 절대수익 창출을 목표
· ETF,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등을 활용하여 시장 리스크 대응 및 수익 창출 기회 확보</td></tr>
<tr><td>투자신탁 계약기간</td><td>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td></tr>
<tr><td>회계기간</td><td>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 1년간</td></tr>
<tr><td>회계감사</td><td>회계기간(1년) 말일 및 투자신탁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2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td></tr>
<tr><td>투자신탁보수
(성과보수 내용 포함)</td><td>·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판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투자신탁 보수(연, 순자산총액 기준, %)
<table>
<tr><th>구분</th><th>총보수</th><th>판매회사</th><th>집합투자업자</th><th>신탁업자</th><th>사무관리회사</th></tr>
<tr><td>종류 C-F</td><td>1.08</td><td>0.01</td><td>1.00</td><td>0.05</td><td>0.02</td></tr>
</table>
· 성과보수 : 환매 또는 이익분배 시 초과수익의 15%.
· 산식 : Max[(성과보수계산기간 말일의 투자신탁 평가액 – High Water Mark 평가액) × 성과보수율(15%), 0]
* High Water Mark : 성과보수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투자자가 과거에 경험한 가장 높은 기준가격을 의미합니다. 성과보수는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이 최고수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라이프자산운용</td></tr>
<tr><td>신탁업자</td><td>KB증권</td></tr>
<tr><td>사무관리회사</td><td>KB펀드파트너스</td></tr>
</table>

(3) 라이프 Core 일반사모투자신탁 제6호

구분	내용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혼합자산,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설정일</td><td>2026년 4월 30일</td></tr>
<tr><td>투자대상</td><td>· 국내 상장주식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인버스, 레버리지 포함)
· 장내파생상품(주가지수 선물, 주식 선물, 옵션 포함)
· 장외파생상품(TRS 포함)
· 현금성(MMF, RP 등 포함)자산
(레버리지 한도: 100%)</td></tr>
<tr><td>투자전략</td><td>· 국내 상장주식 내 주주환원 확대 가능 기업, 중소형 가치주, 성장 모멘텀 보유 기업, 기업 이벤트 발생 종목 등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를 유연하게 활용하여 수익 기회를 발굴
· ETF 및 장내·장외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시장 변동성 확대 구간에 대응하고 꾸준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운용을 추구
· 적극적으로 현금성 자산을 조정하여 변동성 관리 추구</td></tr>
<tr><td>투자신탁 계약기간</td><td>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td></tr>
<tr><td>회계기간</td><td>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 1년간</td></tr>
<tr><td>회계감사</td><td>회계기간(1년) 말일 및 투자신탁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2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td></tr>
<tr><td>투자신탁보수
(성과보수 내용 포함)</td><td>·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판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투자신탁 보수(연, 순자산총액 기준, %)
<table>
<tr><th>구분</th><th>총보수</th><th>판매회사</th><th>집합투자업자</th><th>신탁업자</th><th>사무관리회사</th></tr>
<tr><td>종류 C-F</td><td>1.08</td><td>0.01</td><td>1.00</td><td>0.05</td><td>0.02</td></tr>
</table>
· 성과보수 : 환매 또는 이익분배 시 초과수익의 15%.
· 산식 : Max[(성과보수계산기간 말일의 투자신탁 평가액 – High Water Mark 평가액) × 성과보수율(15%), 0]
* High Water Mark : 성과보수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투자자가 과거에 경험한 가장 높은 기준가격을 의미합니다. 성과보수는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이 최고수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라이프자산운용</td></tr>
<tr><td>신탁업자</td><td>KB증권</td></tr>
<tr><td>사무관리회사</td><td>KB펀드파트너스</td></tr>
</table>

(4) 라이프 Engagement 일반사모투자신탁 제5호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종류 및 형태</td><td>투자신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혼합자산,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td></tr>
<tr><td>설정일</td><td>2024년 10월 7일</td></tr>
<tr><td>투자대상</td><td>· 주요 투자 대상: 국내 상장주식 및 현금성 자산
· 헷지목적 투자 대상: ETF(인버스, 레버리지 포함), 장내 파생상품(주가지수 선물, 주식 선물)
(레버리지 한도: 200% 이내)</td></tr>
<tr><td>투자전략</td><td>· 국내 상장 기업 중 기업가치 향상 가능성이 있는 저평가 기업 선별
· 우호적 행동주의 전략을 통해 기업가치를 개선하여 지속적인 수익 추구
· 기회 포착 시 유무상증자 차익거래 및 블록딜 등을 활용한 알파 수익 창출</td></tr>
<tr><td>투자신탁 계약기간</td><td>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td></tr>
<tr><td>회계기간</td><td>매년 12월 27일부터 다음 해 12월 26일까지</td></tr>
<tr><td>회계감사</td><td>회계기간(1년) 말일 및 투자신탁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2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td></tr>
<tr><td>투자신탁보수
(성과보수 내용 포함)</td><td>·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판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투자신탁 보수(연, 순자산총액 기준, %)
<table>
<tr><th>구분</th><th>총보수</th><th>판매회사</th><th>집합투자업자</th><th>신탁업자</th><th>사무관리회사</th></tr>
<tr><td>종류 C-F</td><td>1.12</td><td>0.05</td><td>1.00</td><td>0.05</td><td>0.02</td></tr>
</table>
※ 종류 C-F는 2026.10.16 신탁계약 개정으로 신설
· 성과보수 : 환매 또는 이익분배 시 초과수익의 15%.
· 산식 : Max[(성과보수계산기간 말일의 투자신탁 평가액 – High Water Mark 평가액) × 성과보수율(15%), 0]
* High Water Mark : 성과보수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투자자가 과거에 경험한 가장 높은 기준가격을 의미합니다. 성과보수는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이 최고수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라이프자산운용</td></tr>
<tr><td>신탁업자</td><td>신한투자증권</td></tr>
<tr><td>사무관리회사</td><td>KB펀드파트너스</td></tr>
</table>

(5) 라이프 META 일반사모투자신탁 제4호

구분	내용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혼합자산,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설정일	2026년 10월 20일
투자대상	· 국내 상장주식 · 국내 상장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ETF, 인버스·레버리지 포함) · 국내 채권(투자등급채권, 기업어음증권, 단기사채 등) 및 채권 ETF · 장내 파생상품(주가지수 선물, 주식 선물) · 주식차입매도거래(Short Selling)를 위한 증권차입 · RP, MMF 등 현금성 자산 (레버리지 한도: 200% 이내)
투자전략	· 국내 상장된 기업 중 정책·제도 변화 등의 영향으로 재무구조 및 지배구조 재평가 이벤트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저평가 종목을 선별하여 투자함 · 우호적 행동주의(주주협력주의, Engagement) 전략으로 기업가치 개선을 추구하며, 국내 자산을 활용한 Long/Short, Event-driven 등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함 · 시장 상황에 따라 ETF(인버스·레버리지 포함), 장내 파생상품, 주식차입매도 등을 활용하고 현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조절하여 시장 리스크에 대응함 · 채권 및 채권 ETF를 활용하여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변동성 리스크를 관리함
투자신탁 계약기간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
회계기간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 1년간
회계감사	회계기간(1년) 말일 및 투자신탁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2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투자신탁보수
(성과보수 내용 포함)</td><td>·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판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투자신탁 보수(연, 순자산총액 기준, %)
<table>
<tr><th>구분</th><th>총보수</th><th>판매회사</th><th>집합투자업자</th><th>신탁업자</th><th>사무관리회사</th></tr>
<tr><td>종류 C-F</td><td>1.12</td><td>0.05</td><td>1.00</td><td>0.05</td><td>0.02</td></tr>
</table>
· 성과보수 : 환매 또는 이익분배 시 초과수익의 15%.
· 산식 : Max[(성과보수계산기간 말일의 투자신탁 평가액 – High Water Mark 평가액) × 성과보수율(15%), 0]
* High Water Mark : 성과보수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투자자가 과거에 경험한 가장 높은 기준가격을 의미합니다. 성과보수는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이 최고수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 이익분배금이 성과보수보다 적은 경우 잔여 성과보수는 다음 계산기간으로 이연됩니다.</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라이프자산운용</td></tr>
<tr><td>신탁업자</td><td>KB증권</td></tr>
<tr><td>사무관리회사</td><td>KB펀드파트너스</td></tr>
</table>

(6) 라이프 앱솔루트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구분	내용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혼합자산,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설정일	2026년 6월 12일
투자대상	· 국내 상장주식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인버스, 레버리지 포함) · 장내파생상품(주가지수 선물, 주식 선물) · 장외파생상품(TRS 限) · 주식차입매도거래(Short Selling)를 위한 증권차입 · 현금성(MMF, RP 등 포함)자산 (레버리지 한도: 200%)
투자전략	· 국내 상장 종목을 대상으로 주주환원, 중소형주, 성장주, 이벤트 드리븐 등 다양한 Active Long-Biased 전략을 활용하여 수익 창출을 목표 · 시장 환경에 따라 ETF, 파생상품 등 레버리지 수단을 활용하여 투자 효율성 제고하는 전략 · 현금성 자산(MMF, RP등), ETF, 파생상품 등을 활용해 시장 변동성 대응
투자신탁 계약기간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회계기간</td><td>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 1년간</td></tr>
<tr><td>회계감사</td><td>회계기간(1년) 말일 및 투자신탁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2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td></tr>
<tr><td>투자신탁보수
(성과보수 내용 포함)</td><td>·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판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투자신탁 보수(연, 순자산총액 기준, %)
<table>
<tr><th>구분</th><th>총보수</th><th>판매회사</th><th>집합투자업자</th><th>신탁업자</th><th>사무관리회사</th></tr>
<tr><td>종류 C-F</td><td>1.08</td><td>0.01</td><td>1.00</td><td>0.05</td><td>0.02</td></tr>
</table>
· 성과보수 : 환매 또는 이익분배 시 초과수익의 15%.
· 산식 : Max[(성과보수계산기간 말일의 투자신탁 평가액 – High Water Mark 평가액) × 성과보수율(15%), 0]
* High Water Mark : 성과보수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투자자가 과거에 경험한 가장 높은 기준가격을 의미합니다. 성과보수는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이 최고수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라이프자산운용</td></tr>
<tr><td>신탁업자</td><td>삼성증권</td></tr>
<tr><td>사무관리회사</td><td>KB펀드파트너스</td></tr>
</table>

(7) 라이프 VOYAGER 일반사모투자신탁 제4호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종류 및 형태</td><td>투자신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혼합자산,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td></tr>
<tr><td>설정일</td><td>2026년 2월 10일</td></tr>
<tr><td>투자대상</td><td>·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IPO, SPAC을 포함)
·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ETF” / 인버스, 레버리지 포함)
·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된 REITs, 메자닌(CB, BW, CPS, RCPS 등)
· 국내/외 투자등급채권(취득시점 기준 1개 이상 신용평가기관 등급 / 국내 기준 BBB- 이상), 단기사채 및 기업어음증권(취득시점 기준 1개 이상 신용평가기관 등급 / 국내 기준 A3- 이상)
·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된 파생상품
·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총 투자자산의 20% 이하)
· 국내 장외 파생상품(TRS 포함)</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td><td>· 주식차입매도거래(Short Selling)를 위한 증권차입
· 현금성 자산(MMF, RP 등)
(레버리지 한도: 200% 이내)</td></tr>
<tr><td>투자전략</td><td>· 본 펀드는 가치투자를 기반으로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의 구사를 통해 변동성을 낮추면서 절대수익을 추구하고자 함
· 국내/해외의 저평가 가치주, 주주환원, 중소형주, 성장주 등을 활용하여 Active Long-Biased 전략을 활용하여 수익 창출을 목표
· 시장 상황에 따라 국내/해외거래소에 상장 또는 거래가 가능한 투자 대상자산(주식, ETF, REITs, 메자닌, 채권, 장내 파생상품, Short Selling 등)을 활용하여 Long/Short, Global Macro, Event-driven 전략 등을 활용하여 시장 리스크 대응 및 추가 수익을 추구</td></tr>
<tr><td>투자신탁 계약기간</td><td>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td></tr>
<tr><td>회계기간</td><td>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 1년간</td></tr>
<tr><td>회계감사</td><td>회계기간(1년) 말일 및 투자신탁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2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td></tr>
<tr><td>투자신탁보수
(성과보수 내용 포함)</td><td>·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판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투자신탁 보수(연, 순자산총액 기준, %)
<table>
<tr><th>구분</th><th>총보수</th><th>판매회사</th><th>집합투자업자</th><th>신탁업자</th><th>사무관리회사</th></tr>
<tr><td>종류 C-F</td><td>1.60</td><td>0.01</td><td>1.50</td><td>0.06</td><td>0.03</td></tr>
</table>
· 성과보수 : 환매 또는 이익분배 시 초과수익의 15%.
· 산식 : Max[(성과보수계산기간 말일의 투자신탁 평가액 – High Water Mark 평가액) × 성과보수율(15%), 0]
* High Water Mark : 성과보수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투자자가 과거에 경험한 가장 높은 기준가격을 의미합니다. 성과보수는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이 최고수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라이프자산운용</td></tr>
<tr><td>신탁업자</td><td>삼성증권</td></tr>
<tr><td>사무관리회사</td><td>KB펀드파트너스</td></tr>
</table>

(주) High Water Mark: 성과보수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투자자가 과거에 경험한 가장 높은 기준가격을 의미하며, 기준가격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성과보수가 부과됩니다.

라) 주요 전략 예시

(1) 탄력적 주식비중 조절(Asset-Allocation) 전략

초기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수동적(Passive)으로 시장 추세를 추종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투자기회 유무에 따라 펀드 내 주식 편입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전략입니다. 절대적 투자기준에 부합하는 종목이 많을 경우 주식비중을 확대하고, 매력적인 투자기회가 관측되지 않을 때는 주식비중을 과감하게 축소하여 수익 변동성을 관리합니다. 금리 및 수급 등 주요 매크로 지표를 점검하여 하락 변동성이 예상되는 경우 현금성 자산을 선제적으로 늘려 변동성을 관리하나, 주식비중 조절 시점에 대한 판단이 시장 흐름과 다를 경우 상승장에서 기회비용이 발생하거나 하락장에서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2) 주식 롱바이어스(Active Long-Biased) 전략

주식 매수(Long), 매도(Short) 포지션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지만, 주로 매수 포지션의 비중이 높은 성향을 보이며, 순주식노출(매수포지션 합계 – 매도포지션 합계)을 더 크게 유지하여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국내외 상장 종목을 대상으로 주주환원, 중소형주, 성장주, 이벤트 드리븐 등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를 활용하며, 추가 헤지가 필요한 경우 ETF(인버스 등), 파생상품, 증권차입 등을 병행 활용합니다. 상승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하고 하락장에서 일부 매도(Short) 포지션으로 시장 하락위험을 일부 방어할 수 있으나, 하락장에서는 매수(Long) 포지션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주주협력주의(인게이지먼트) 전략

시장에서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받는 기업에 5% 미만 지분의 영향력 있는 소수주주로 참여하여, 경영진·최대주주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자본효율성, 주주환원정책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재평가 이벤트를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기업과 대립하지 않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체질 개선과 시장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며, 기업 개선 효과와 시장의 긍정적 반응을 확인한 후 적절한 시점에 지분을 매각합니다. 다만, 기업의 개선 노력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기대수익이 실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롱숏 전략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을 선별하여 매수(Long)하고, 고평가되거나 가치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은 증권차입 등을 통해 매도(Short)하여 차익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우량 종목의 상승폭을 크게 누릴 수 있고, 하락장에서는 부정적 전망 종목의 매도(Short) 포지션이 방어 역할을 하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의 흐름이 반대로 움직이거나 시장 전체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에는 매수(Long) 포지션과 매도(Short) 포지션 간 차이가 줄어들어 성과가 저하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5) 이벤트드리븐 전략

국내외 기업의 M&A, 기업분할,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이벤트 전·후 국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이벤트 발생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급 불균형과 가격 비효율 구간을 활용

해 알파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시장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이벤트 발생 시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하락 국면에서도 시장과 무관하게 이벤트 성사 여부에 따라 수익을 추구할 수 있지만, 이벤트가 무산되거나 지연될 경우에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유무상증자 차익거래 및 블록딜 전략

유무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 차이를 활용한 차익거래나, 대규모 주식이 일시에 거래되는 블록딜(Block Deal)에 참여하여 유동성 할인 및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을 투자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기회 포착 시 알파수익 창출을 추구하나, 거래 조건의 변동, 시장 변동성 확대, 유동성 악화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멀티 전략

국내외 주식 및 다양한 투자자산을 활용한 폭넓은 투자 유니버스를 바탕으로, 기계적인 자산배분을 지양하고 시장환경과 자산별 기회에 따라 전략과 자산비중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전략입니다.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전략들을 함께 운용함으로써 특정 전략이 부진하더라도 다른 전략이 이를 보완하여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전략 간 상충되는 포지션이 존재하는 등의 문제로 기대했던 분산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글로벌 매크로(Global Macro) 전략

가치투자를 기반으로 국내외 거시경제 환경과 시장 상황에 따라 국내/해외 거래소에 상장 또는 거래가 가능한 주식, ETF, 채권, 장내파생상품 등의 자산 배분을 조절하여 변동성을 낮추면서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거시경제 및 시장 방향성에 대한 판단이 실제와 다를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외자산 투자 시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ETF·파생상품을 활용한 헤지 전략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버스·레버리지 포함)나 주가지수선물·주식선물 등 장내파생상품, TRS 등 장외파생상품, 증권차입 등을 활용하여 시장 전체의 방향성에 대한 투자 비중을 조절하고 시장리스크를 헤지하는 전략입니다. 개별 주식을 직접 매매하는 것에 비해 효율적으로 순투자비중(Net Exposure)을 관리할 수 있으나, 시장의 흐름이 예상과 다를 경우 손실이 커질 수 있고, 파생상품 특성상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10) 채권 전략

국고채, 단기 크레딧, 채권형 ETF 등을 일부 편입하여 포트폴리오의 완충 역할을 수행하는 전략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시장 대비 낙폭을 축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채권 보유에 따른 이자수익 및 자본 차익을 추구할 수 있으나, 금리 상승기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회사채의 경우 발행 회사의 신용위험에 따른 가격 변동 위험이 있습니다.

(11) 공모주 전략

신규 상장 기업의 주식(SPAC 포함)을 공모 가격에 매수하여 상장 후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공모가 밑으로 주가가 떨어질 위험이 있으며, 유리한 가격과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기간 매도금지(Lock-up)를 확약하는 경우 매도 시점이 제한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메자닌 전략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전환우선주(CPS),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의 메자닌 증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상승장에서 주가 전환을 통해 추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동시에 하락장에서는 일정 수준의 이자 수익이 방어 역할을 하지만, 발행 기업이 부실하거나 전환 가격이 주가보다 높을 경우에는 기대 수익이 줄어드는 위험이 있으며, 일반채권 대비 발행물량이 적고 시장이 협소하여 적정가격에 매각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할 수 있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요 전략을 예시로 설명한 것이며, 그 외의 투자전략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주) 이 투자신탁은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유동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전략의 특성상 비교 가능한 지수가 존재하지 않아 비교지수를 지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시 협회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 상기 투자전략은 운용상황,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위험관리

가) 이 투자신탁은 다양한 전략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운용기준에 따른 사전검토 절차를 거쳐 시장 내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중심으로 선별하여 투자함으로써 유동성 위험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편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다음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기,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위험관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주기	주요 내용
매일	피투자펀드 기준가격, 편입비 한도(동일 집합투자기구 20%, 발행지분 50%) 및 운용제한 점검
매월	월간 운용보고서 기준 운용성과, 주식비중·베타·MDD, 섹터 노출, 운용지침 준수 현황 점검
매분기	전략별 성과 기여도, 피투자펀드 간 종목 중복도, 유동성 및 환매 대응 능력 점검, 리밸런싱 검토
수시	운용인력 변경, 대량환매, 운용지침 위반, 피투자펀드 환매연기 등 중대 변화 발생 시 즉시 점검 및 보고

나) 투자심의위원회 등 투자관련 회의를 통한 공동 의사결정과 다양한 투자판단 지표를 통하여 펀드매니저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위험을 최소화하며,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에는 사내 사전

자산배분기준에 따라 투자신탁별로 공정하게 배분합니다. 다만, 이를 통해 상기 위험이 완전히 해소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위험관리 조직 및 절차]

구분	내용
조직	· 리스크관리본부(운용본부와 독립된 조직), 준법감시인, 감사 · 리스크관리위원회: 각종 리스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 · 주문·배분: 사전자산배분기준에 따라 매매 전 투자신탁별 주문서·자산배분명세서 작성,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 구분, 준법감시인 확인
시스템	· FOS: 장중 주문 모니터링 · MOS: 사전·사후 법규·약관 준수 점검 · BOS: 데일리 운용내역 점검
위험 측정	· 시장: 베타 트래킹, VaR, 손실률, 시가괴리율 · 신용: 신용등급 변동, 만기·집중도, 유의자산 보유현황 · 유동성: 환매규모·환매일정, 현금성 자산 · 운영: 프론트·백오피스 업무처리 프로세스 점검
관리 절차	· 사전관리: 개별상품 위험분석, 가상 시장환경 시뮬레이션, 약관상 편입비 한도 체크, 투자가능 유니버스 관리 · 중간관리: 펀드 위험요인 모니터링, 종목별 손절매(Loss Cut) 체크 · 사후관리: 위반규정 통제, 리스크 조정, 리스크관리본부 보고

[유동성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조치계획]

당사는 유동성 위험 및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적시에 인식, 평가, 감시, 통제하는 등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규정 등 내부 규정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상대응상황이 발생할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제반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합니다.

단계	대응 계획
정상	위기상황 시나리오 분석, 현금성 자산 비율 및 피투자펀드 환매일정 모니터링
주의(1단계)	일정 규모 이상의 대량환매 발생 시 환매발생 원인 파악 및 추가 환매 추이 모니터링
심각(2단계)	실무 회의 소집, 경영진 보고 및 대응조치 결정
위기(3단계)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집, 환매연기 등 법적 조치 검토

다) 이 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 외화 자산에 직접 투자하지 않을 예정임에 따라, 환율변동위험 회피를 위한 별도의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투자펀드가 해외자산에 투자하고 환헤지를 하지 않을 수 있어 환율변동에 간접적으로 노출됩니다.

라) 동일 집합투자업자 편입에 따른 이해상충 관리

이 투자신탁은 라이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만 투자하므로, 피투자펀드의 선정·비중 결정·환매 시점에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와 피투자펀드의 다른 투자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간 이해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이 관리합니다.

① 피투자펀드의 설정액 유지·증대나 다른 투자자의 환매 대응을 위한 자금 투입 등 이 투자신탁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② 피투자펀드 환매 시 다른 투자자와 동일한 조건(청구 마감시간, 기준가 적용일)으로 처리하며, 내부정보를 이용한 선행 환매를 하지 않습니다.

③ 집합투자기구간 자산 거래는 법 제85조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지 않습니다.

④ 보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보수는 연 0.01%로 책정하며, 피투자펀드에는 집합투자기구가 가입하는 종류 C-F 수익증권(판매보수 연 0.01%~0.05%)으로 투자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시장상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라이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분산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투자대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가격 변동 등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을 기재한 것으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은 피투자펀드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피투자펀드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이 투자신탁에 그대로 전이됩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라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피투자펀드는 주식, 채권, 어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정책 변화, 세제의 변경 등이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 또는 피투자펀드의 투자대상자산은 국내외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자연현상 등 다양하고 복잡한 변수의 영향을 받아 가격변동 위험을 수반합니다. 이러한 가격변동으로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이르는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피투자펀드의 운용구조, 투자성과, 보수, 거래비용 등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하락위험	피투자펀드는 국내외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므로 전체 주식시장의 변동 또는 개별기업의 실적 변화 등에 따른 주가 하락 위험을 부담합니다. 주식가격은 시장 전체 위험의 증가 및 투자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신용상태 악화 등 개별위험의 증가에 따라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투자펀드는 중소형주와 저평가 가치주에 상대적으로 많이 투자할 수 있어 시장 대비 가격 변동이 크거나 가치가 재평가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피투자펀드가 투자하는 증권의 발행회사 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의 신용상태가 악화되거나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원금과 이자에 대한 회수 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투자신탁의 환매연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이 유동성 관리를 위해 편입하는 채권형 ETF 및 피투자펀드가 보유하는 채권은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가격이 하락합니다. 따라서 채권 등 비교적 안전한 자산이라 하더라도 금리변동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피투자펀드는 헤지 또는 투자 목적으로 장내·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적은 증거금으로 큰 금액의 거래가 가능한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보다 손실이 확대될 수 있으며, 헤지 목적으로 활용하더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위험	일부 피투자펀드(VOYAGER 4호 등)는 해외 주식·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대상국의 정치·경제 상황, 외환 규제, 세제 변경, 시장 운영시간 차이 등에 따라 국내투자보다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화자산에 직접 투자하지 않아 별도의 환헤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투자펀드가 해외자산에 투자하면서 환헤지를 하지 않거나 일부만 하는 경우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 간 환율 변동이 피투자펀드의 기준가격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간접적으로 반영되며, 환율 변동 방향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증권대여위험	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피투자펀드는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재산을 증권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해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차입위험	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피투자펀드는 투자재산을 증권차입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입자산을 매도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 인해 그 차액(매도가-매수가)만큼의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입거래에 따른 담보 제공 및 차입거래 수수료로 인하여 기회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차입한 주식에 대해 대여기간 중 대여자의 환수요청이 발생할 경우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재차입이 여의치 못할 경우 차입매도 전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으로 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매도 주식 반환을 위한 주식 매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중지위험	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피투자펀드가 편입하는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일체의 자산은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하락, 채무불이행, 부도 등의 사유 발생시 투자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이르는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피투자펀드가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사모투자재간접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입니다. 피투자펀드는 개별적인 운용전략과 포트폴리오로 운용되며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어, 투자자는 직접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나 공모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펀드의 기준가격은 1영업일 경과 후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반영되므로 투자자가 생각하는 반영시점과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투자펀드 위험 전이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피투자펀드에 투자하므로, 피투자펀드에서 발생한 손실, 환매연기, 운용규제 위반, 해지 등의 위험이 이 투자신탁에 그대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피투자펀드의 운용을 직접 통제할 수 없으며 피투자펀드의 신탁계약서에 따릅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동일 집합투자업자 집중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펀드는 모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라이프자산운용이 운용합니다. 피투자펀드 간 투자철학, 리서치, 투자종목이 상당 부분 중복될 수 있어 5가지 전략에 분산하더라도 운용사 분산 효과는 없습니다. 또한 핵심 운용인력의 이탈, 내부통제 실패, 감독당국의 제재, 평판 하락, 회사의 재무상태 악화 등 집합투자업자 고유의 위험이 발생하면 이 투자신탁과 모든 피투자펀드가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상충 위험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피투자펀드를 선정·평가하고 비중을 결정하므로, 피투자펀드의 보수 수취, 설정규모 유지, 다른 투자자의 환매 대응 등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가 이 투자신탁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펀드의 집합투자업자로서 해당 펀드의 다른 투자자와 이 투자신탁 투자자 간 이해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예: 대량 환매 시 환매 순서, 비유동자산 처분). 집합투자업자는 제2부 9. 가. 2) 라)의 이해상충 관리체계에 따라 관리하나, 이해상충이 완전히 제거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피투자펀드 규약 변경 및 해지 위험	피투자펀드의 투자전략, 투자한도, 보수, 환매주기 등은 해당 펀드의 신탁계약서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피투자펀드가 해지·청산되거나 이 투자신탁의 편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피투자펀드를 교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비용과 투자 공백이 발생하거나 불리한 시점에 환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관련 위험	피투자펀드는 레버리지전략(적은 금액으로 투자금액 이상의 높은 변동성을 추구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공모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분산투자 규제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운용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공모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이 배제되는 주요 운용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동일 종목 증권 투자제한(10%) ② 동일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 투자제한(50%) ③ 동일 집합투자증권 투자제한(20%, ETF 30%) ④ 동일 집합투자증권 총수 제한(20%) ⑤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제한(100%) ⑥ 증권의 대여 제한(50%) ⑦ 증권의 차입 제한(20%)
레버리지 위험	피투자펀드는 파생상품, 증권차입, 총수익스왑(TRS) 등을 활용하여 순자산을 초과하는 규모로 투자할 수 있으며(피투자펀드별 한도는 제2부 9. 가. 1) 다) 참조), 이 경우 시장이 예상과 반대로 움직이면 손실이 레버리지 배수만큼 확대되어 순자산 대비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정보접근 제약 위험	피투자펀드는 공시 의무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상품 및 운용과 관련된 정보 접근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한된 정보 접근에 따라 투자의사결정 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모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준가격 관련 위험	피투자펀드는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투자펀드의 집합투자업자가 공정가치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자산평가를 시행합니다. 다만 산정된 공정가치가 시장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이 투자신탁과 피투자펀드의 집합투자업자가 동일하므로 평가의 독립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피투자펀드 및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불완전한 상태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성과보수 적용펀드 투자위험	피투자펀드는 운용보수 외에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라 성과보수를 부과합니다. 성과보수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의 예상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이 실현될 수 있으며, 성과보수를 채택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것보다 실현되는 수익률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피투자펀드의 성과보수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라이프자산운용에 귀속됩니다.
다중비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피투자펀드에 투자하여 목표하는 포트폴리오를 간접적으로 구성하므로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피투자펀드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합니다. 이로 인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궁극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전체비용이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종목·섹터)	피투자펀드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종목이나 특정 산업·섹터(예: 반도체·AI 인프라, 지배구조 개선 기업, 고배당주)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어, 변동성 및 일부 종목·섹터가 펀드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하위펀드 간 상호연동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복수의 피투자펀드가 동일 업종·자산군·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포지션이 겹쳐 사실상 집중 투자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 충격 시 손실이 여러 피투자펀드에서 동시에 확대되거나 피투자펀드들의 유동성 조치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매매위험	피투자펀드는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수행할 수 있으며, 통상 이러한 전략은 상대적으로 높은 매매비용을 수반하고 시장수익률과의 괴리가 클 수 있습니다.
주주협력주의(인게이지먼트) 전략 위험	일부 피투자펀드는 투자기업의 경영진과 협력하여 자본효율성·주주환원·지배구조 개선을 제안하는 전략을 활용합니다. 기업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개선이 지연되는 경우 기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관련 법령(대량보유 보고, 경영참여 목적 규제 등)의 변경이나 해석에 따라 전략 수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롱숏 전략 위험	피투자펀드는 롱숏(Long/Short) 전략 수행을 위해 증권을 차입매도하거나 TRS 등 파생거래로 매도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도 전략은 시장 상황, 유동성, 대차물량 등의 변화에 따라 의도한 헤지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수 있으며, 매수·매도 포지션에서 동시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또한 차입 물량 부족, 대차 조건 악화, 증거금 요구 확대 등으로 매도 전략의 유지 또는 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숏 스퀴즈 위험	피투자펀드가 차입매도한 증권의 가격이 상승하면 손실이 발생하며, 차입매도 포지션 보유자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매수하거나 증권 대여자가 경쟁적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품귀현상으로 반환 요청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드리븐 전략 위험	피투자펀드는 M&A, 기업분할, 자사주 매입·소각, 공개매수 등 특정 이벤트에 따른 가격 변동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가 무산·지연되거나 시장의 반응이 예상과 다른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TRS 등) 관련 위험	일부 피투자펀드는 총수익스왑(TRS) 등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의 결제불이행 위험, 기초자산 발행인의 신용위험, 레버리지에 따른 손실 확대 위험이 있으며, 비용·통화가치 변동·기초자산과 평가액 간 괴리 등으로 성과가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장 급변이나 거래소의 거래정지·폐쇄 등으로 자산 처분 및 환매 대응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전담중개업자(Prime Broker) 신용위험	피투자펀드는 전담중개업자와 자산의 중개,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유동성 공급, 신용공여 및 레버리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전담중개업자의 신용위험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됩니다. 특히 전담중개업자가 담보자산을 대여 또는 재담보로 활용하는 경우 전담중개업자의 파산 시 자산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회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공모주·SPAC 투자위험	일부 피투자펀드는 공모주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는 과거 거래 전례가 없어 기존 주식보다 가격변동성이 클 수 있고, 한정된 배정물량으로 충분한 물량을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의무보유확약(Lock-up)으로 매도가 제한되어 주가 하락 시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이 저조한 경우 신청 물량 전체를 인수해야 하는 위험도 있습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합병 대상 기업을 찾지 못하거나 합병 조건이 불리한 경우 기대수익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예정 기업이 상장예비심사 기각 등으로 상장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대상 기업 및 신탁재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관련사채(메자닌) 투자위험	일부 피투자펀드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관련사채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관련사채는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 위주로 발행되어 부도 가능성이 있고, 일반채권 대비 발행물량이 적고 시장이 협소하여 매각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적정가격을 받지 못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리츠(REITs) 등 대체자산 투자위험	일부 피투자펀드는 리츠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부동산 경기, 금리, 임대수익 변동 등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거나 유동성이 낮아 원하는 시기에 매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스템 위험	피투자펀드는 차별화된 수익률이나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수행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전략은 대부분 일반적인 확률 하에서 이루어지거나 제한된 조건에서 유의미합니다. 따라서 금융위기, 경제위기 또는 예상치 못한 시장충격 시 헤지전략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아 급격한 가치 변동 및 가격 급락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시장변동보다 높은 변동성과 예상치 못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산가치 평가위험	피투자펀드의 일부는 비시장성 자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입수 가능한 시장 및 기타 자료를 바탕으로 신의성실에 따라 그 가치를 평가합니다. 다만 이러한 평가는 주관적일 수 있고 평가방법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를 제공할 수 있으며, 투자자에게 제시된 가치와 실제 처분 시 실현되는 가치는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도자산 등의 평가위험	이 투자신탁 또는 피투자펀드가 보유한 자산이 발행사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신청, 파산절차 진행 등으로 부실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거쳐 상각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각 후 발행사의 회생에 따라 가치가 다시 상승하거나 청산에 따라 가치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피투자펀드 예상배당 위험	피투자펀드는 보유 증권에 대하여 배당락 기준으로 종목별 예상배당액을 추정하여 기준가격에 반영합니다. 예상배당금액은 추후 주주총회에서 확정되는 실제 배당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확정된 실제 배당금액이 예상배당금액보다 적을 경우 피투자펀드 및 이 투자신탁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법률위험	피투자펀드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공모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감독을 받고 투자자보호 규정 역시 약한 수준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별로 법률상 구조행위 및 소송 등에 의존하여 재산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높을 수 있고, 다양한 법률행위가 발생하여 피투자펀드 운용역의 운용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위험	피투자펀드는 보유 증권에 대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의결권이나 매수청구권 등 기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을 다하지만, 권리행사 결과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델위험	피투자펀드는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당기간 특정 투자모델(퀀트 분석 등)의 성과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델의 구성, 개량 및 향후 변경 등으로 인해 피투자펀드가 추구하는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상당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헤지전략 위험	피투자펀드는 시장위험 헤지를 위해 인버스 ETF 및 주가지수선물 매도 등의 전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위험이 반드시 헤지되는 것은 아니며, 매수와 매도 포지션 모두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전략 규모의 위험	피투자펀드는 활용하는 전략이 일정 규모 이하에서만 유효한 전략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투자펀드 규모가 급증하거나 급감하면 해당 전략의 효과가 저하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오류 위험	이 투자신탁 또는 피투자펀드의 기준가격 산정 중 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판매회사 등 관련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1,000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가격 산정오류가 오차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우 해당 투자신탁을 청약하거나 환매한 투자자와 기존 투자자 사이에 서로 다른 경제적 가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환매주기 관련 위험	피투자펀드는 투자대상 자산의 유동성 제약 등을 이유로 환매청구 시점부터 환매대금 지급일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 투자신탁의 환매주기도 일반적인 투자신탁보다 길게(17시 이전 환매청구 시 5영업일 기준가격 적용, 7영업일 지급)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투자자금을 유동화하기 원하는 투자자나 환매기간 동안의 가치변동 위험을 원치 않는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모투자재간접 요건 유지 위험	이 투자신탁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대량환매, 피투자펀드 가격 하락 등으로 그 비중이 50% 이하로 낮아지거나, 피투자펀드가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되어 편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거나 해당 피투자펀드를 처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불리한 시점에 거래하게 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적용 시차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에 적용되는 매입·환매 기준가격과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펀드를 실제 매입·환매하는 가격 사이에는 피투자펀드별 매입·환매 기준시간 및 기준가격 적용일 차이로 인해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의 경우 그 시차가 더 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 수익자의 수익률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투자펀드 성과보수 확정 관련 이해상충 위험	피투자펀드의 성과보수는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펀드를 환매하는 시점에 확정되어 집합투자업자인 라이프자산운용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리밸런싱이나 해지 등으로 피투자펀드를 환매하는 경우 성과보수가 확정될 수 있으며, 피투자펀드의 비중 조절 권한이 같은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고유재산 회수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의무 고유재산 외에 추가로 고유재산을 투자하였으며, 추가 고유재산은 투자기간(1년) 경과 후 시장상황에 따라 회수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규모에서 고유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그 회수로 인해 대량환매와 유사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투자신탁 규모가 감소하여 소규모 투자신탁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위험	이 투자신탁 또는 피투자펀드가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결여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대상 자산의 거래 부진 등으로 원하는 시기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투자펀드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하는 경우 적시에 환매에 응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량환매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하면 환매자금을 우선 조달하기 위해 피투자펀드를 환매해야 하며, 이로 인해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구사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고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대량환매는 피투자펀드의 대량환매로 이어져 피투자펀드의 다른 투자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피투자펀드의 환매연기, 자산 처분 불가 등 특별한 사유로 이 투자신탁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 사유는 제2부 11. 나. 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환매청구시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재산 가치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운용프로세스 위험	투자활동의 결과는 적절한 투자기회를 식별하고 투자전략을 이행하는 운용인력의 능력에 좌우됩니다. 이 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은 피투자펀드의 운용을 겸하고 있어, 핵심 운용인력의 퇴직·변경 시 이 투자신탁과 여러 피투자펀드가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용실무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운용실무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나, 집합투자기구 운용구조는 복잡한 결제 및 현금 운용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이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기준가격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투자신탁 규모위험	설정부진 또는 환매 등으로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가 되면 피투자펀드 편입과 분산투자에 제약이 발생하거나 각종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투자펀드의 규모가 작으면 발행지분 50% 한도로 인해 의도한 비중을 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해지위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설정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1년(또는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증권대차 거래 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의 관리로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대차증권의 미상환, 담보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제도 변경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과세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과세 위험	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비과세 자산(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에서 발생한 손익이 구분되므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더라도 과세대상 자산에서 이익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납세의무자 관련 위험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투자위험 등급 : 1등급(매우 높은 위험)

이 투자신탁은 라이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다양한 전략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50%를 초과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함에 따라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매우 높은 위험인 1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는 공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운용규제 등이 법령상 배제되어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레버리지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 손실폭이 확대될 수 있으며, 공시 의무를 적용받지 않아 투자자산 등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따른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위험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위험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위험 등급 구분 기준>

1) 투자위험등급 분류 기준(투자대상자산의 종류 기준)

등급	위험수준	내용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등급	위험수준	내용
4등급	보통 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1) 상기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라이프자산운용의 내부기준입니다. 따라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또는 판매회사의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2)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예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또는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추후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말합니다.

(주4)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말합니다.

(주5)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말합니다.

(주6) 편입비율, 최대손실가능비율 등은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운용계획서 등을 기초로 하되, 실제 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7)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 여부 및 투자국가에 따라 위험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8) 파생상품 또는 증권의 차입 등을 통하여 위험노출 수준을 집합투자재산 순자산의 1배수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레버리지형 집합투자기구는 레버리지 수준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주9)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s)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주10)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방법에 따라 별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주11) 상기 분류에 따른 동일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편입자산의 구체적인 운용내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위험등급을 달리 분류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차이 및 가입자격
A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며, 가입제한 없음
A-e	(수수료선취 -온라인)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며,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AG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며,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
C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가입제한 없음
C-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CG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
C-I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기관 및 고액)	수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나.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자 및「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각각 외국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다. 최초 매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개인 또는 500억원 이상인 법인
C-S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집합투자업자)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또는 원활한 운용규모 유지를 위해 가입하는 경우로,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종류		차이 및 가입자격
C-W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랩어카운트) 또는 법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C-P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C-P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C-P2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및 퇴직연금사업자

3) 매입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매입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가)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나)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17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나. 환매

1) 환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7영업일(D+6)에 환매대금을 지급

나)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6영업일(D+5)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8영업일(D+7)에 환매대금을 지급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환매주기는 피투자펀드의 환매주기를 고려하여 설정하였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빈번한 환매에 대하여 별도의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으며, 빈번한 환매를 억제하기 위한 별도의 방침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 17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5영업일전일(17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 6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피투자펀드의 환매연기**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① 또는 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9) 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중도환매불가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	중도환매 허용
-	-	O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게시합니다.(다만, 국경일 등 공휴일 제외)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의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investlife.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주)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재산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2)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구분	내용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무증권	상장채무증권(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합니다)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무증권	비상장채무증권(위의 상장채무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합니다)은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어음 등 및 양도성예금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 상장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비상장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 외화표시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의 전날의 최종시가
장내파생상품	평가기준일에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외국의 장내파생상품인 경우 평가기준일 전날의 가격)
장외파생상품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3)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등

구분	내용
구성	위원장: 대표이사 위원: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마케팅담당임원
업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유지에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 3.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부도채권 등 부실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재산 평가방법 변경(평가오류 및 개선사항 포함)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7.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구분	내용
	8. 기타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규약 등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규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피투자펀드가 보유한 비상장주식·메자닌 등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은 피투자펀드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라이프자산운용)가 정한 방법으로 평가되며, 그 결과가 피투자펀드 기준가격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반영됩니다.

※ 이 투자신탁과 피투자펀드의 집합투자업자가 동일하므로, 피투자펀드 자산의 평가 결과가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평가규정에 따라 평가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심의·의결 사항은 신탁업자에게 통보하고 매 반기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류별로 수익증권이 발행되며, 종류별 보수 및 수수료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2%	-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6%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납입금액의 0.6%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없음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없음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및 고액(C-I)	없음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집합투자업자(C-S)	없음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없음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없음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없음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없음	-	-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

(주)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 시점에서,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 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환매 시 부과합니다. 판매수수료

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연간, %)

명칭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총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총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보수 포함)	증권거래비용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0.010	0.450	0.030	0.010	0.500	0.830	-	0.500	1.517	-
A-e	(수수료선취-온라인)	0.010	0.225	0.030	0.010	0.275	0.560	-	0.275	1.292	-
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0.010	0.240	0.030	0.010	0.290	-	-	0.290	1.307	-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0.010	0.900	0.030	0.010	0.950	1.160	-	0.950	1.967	-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0.010	0.450	0.030	0.010	0.500	0.730	-	0.500	1.517	-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0.010	0.490	0.030	0.010	0.540	-	-	0.540	1.557	-
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및 고액)	0.010	0.030	0.030	0.010	0.080	-	-	0.080	1.097	-
C-S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집합투자업자)	0.010	0.010	0.030	0.010	0.060	-	-	0.060	1.077	-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0.010	0.000	0.030	0.010	0.050	-	-	0.050	1.067	-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0.010	0.640	0.030	0.010	0.690	-	-	0.690	1.707	-

명칭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총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총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보수 포함)	증권거래비용
C-P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0.010	0.320	0.030	0.010	0.370	-	-	0.370	1.387	-
C-P2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0.010	0.250	0.030	0.010	0.300	-	-	0.300	1.317	-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부터 매 3개월 후급				-	-	발생시	-	-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직전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타비용은 예탁원결제보수, 채권평가보수, 감사보수, 펀드평가보수, 지수사용료, 보관대리인 보수, 해외거래예탁비용, 법률자문비용 등이 있으며,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 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총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피투자펀드별 예상 투자비중(제2부 9. 다) 참조)으로 안분한 연간 1.017%를 예상치로 사용하여 산출하였음에 따라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종류 C-F) 보수는 운용 연 1.00%~1.50%, 판매 연 0.01%~0.05%, 신탁 연 0.04%~0.06%, 사무관리 연 0.02%~0.04%로 합계 연 1.08%~1.60% 수준입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2026년 9월 30일 기준, 재간접형)

(주5) 종류 A형과 종류 C형,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각각 약 3년이 경과하는 시점이나,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6)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비용은 상장 또는 등록주식 매매수수료, 장내파생상품 매매수수료, 현금 중개수수료, 대차 또는 대주, Repo 거래 중개수수료 등이 있으며,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최초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증권거래비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발생 내역, 단위 : 천원)
증권거래비용	-

(주7) 금융비용은 상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비용 등이 있으며, 계산이 가능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투자신탁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금액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계기간 중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회계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직전 회계연도의 발생 비용을 기재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최초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금융비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발생 내역, 단위 : 천원)
금융비용	-

(주8) 피투자펀드는 성과보수를 채택하고 있어 상기 보수 및 비용 외에 성과보수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투자펀드별 성과보수는 Core 1호를 제외한 6개 펀드가 High Water Mark 초과수익의 15%, Core 1호가 회계기간별 초과수익의 20%(Hurdle Rate 0%)입니다(제2부 9. 가. 1) 다) 참조). 피투자펀드의 운용보수·성과보수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라이프자산운용이 수취합니다.

(주9)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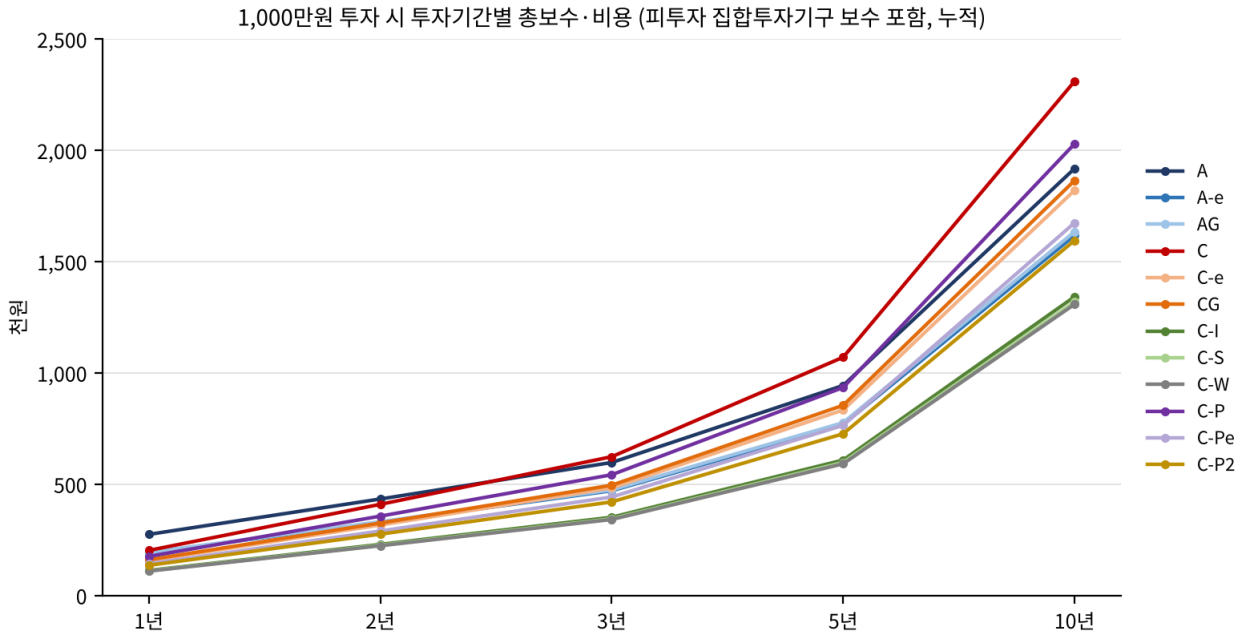
<1,000만원을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 천원]>

종류	구분	1년후	2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71	224	279	397	742
	위 항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74	433	597	943	1,918
수수료선취- 온라인(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8	117	148	214	408
	위 항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92	328	470	768	1,617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AG)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0	120	153	222	427
	위 항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93	331	474	776	1,634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7	199	304	528	1,171
	위 항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02	409	623	1,070	2,310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51	105	161	280	629
	위 항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56	316	483	833	1,820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CG)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55	113	174	302	678
	위 항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60	325	495	854	1,864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기관 및 고액(C-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	17	26	45	103
	위 항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12	229	351	608	1,342

종류	구분	1년후	2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집합투자업자(C-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6	13	19	34	77
	위 항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10	225	344	597	1,319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5	11	16	28	64
	위 항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09	223	341	591	1,308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C-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1	144	221	385	861
	위 항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75	356	542	934	2,029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C-P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8	78	119	208	469
	위 항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42	289	442	764	1,674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C-P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1	63	97	169	381
	위 항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35	275	420	726	1,595

(주1) 종류 A 수익증권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1.2%, 종류 A-e, 종류 AG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0.6%를 가정하여 산출하였으며, 판매사별 판매수수료가 차등화되면 예상되는 총보수·비용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또는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이익분배금의 지급

가)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나) 집합투자업자는 가)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이익분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익분배금은 전액 재투자됩니다.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 최초설정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익분배금에 의한 수익증권의 매수

가)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나)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신탁계약서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3) 상환금 등의 지급

가)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합니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나) 집합투자업자가 신탁계약서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합니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나)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가격 및 과표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기준가격은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하여 산정되는 가격으로서 수익증권의 매입 및 환매 시 적용됩니다. 한편, 과표기준가격은 투자원금에 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반영하여 산정되며, 환매 또는 이익분배 시 수익자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에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비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은 과표기준가격 산정 시 반영되지 않으므로, 기준가격 기준으로 투자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수익자에

게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표기준가격은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됩니다.

구분	금액	비고
투자원금	1,000만원	거주자 개인이 매입
국내 상장주식 매매·평가손익	-100만원	비과세 대상
채권이자·주식배당 등 과세대상 이익	+50만원	과세 대상
기준가격 기준 투자손익	-50만원	실제 투자손실
과세표준(과표기준가격 기준)	50만원	과세대상 이익만 반영
원천징수세액(15.4%)	7.7만원	투자손실에도 세금 발생

(주) 상기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이 투자신탁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므로 실제 과세표준은 피투자펀드 및 이 투자신탁의 과세대상 손익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연금소득(연금 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금액 한도

구분	주요 내용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연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한도	1,5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시 제외)
연금외 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없음
연금외 수령시(부득이한 경우)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연금외 수령시 과세(부득이한 경우)	연금소득세 5.5~3.3%(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 과세이연 :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나)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종합안내(https://100lifeplan.fss.or.kr)의 "연금세제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제도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2부 별첨 피투자펀드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1. 라이프자산운용

가. 조직체계(2026년 10월 15일 기준)

- 설립일: 2018년 9월 18일
- 임직원 수: 49명

나. 내부통제 이력(징계 이력: 없음)

성명	직위(직책)	주요 경력
김희란	상무 (준법감시인)	라이프자산운용 준법감시인 (2022.07~현재) 라이프자산운용 펀드지원팀 (2020.01~2022.06) 맥쿼리투자신탁운용 펀드오퍼레이션 (2007.10~2020.01) HSBC 증권관리부 (2007.06~2007.10) 하나은행 투자신탁부 (2004.04~2007.06)
정희주	차장 (리스크관리본부)	라이프자산운용 리스크관리본부 (2023.09~현재) 유경PSG자산운용 리스크컴플라이언스본부 (2021.11~2023.04) 유경PSG자산운용 오퍼레이션 (2017.10~2021.10) 쿼드자산운용 오퍼레이션 (2013.10~2017.10)
조혜정	과장 (리스크관리본부)	라이프자산운용 리스크관리본부 (2026.03~현재) 하나증권 패밀리오피스본부 (2023.05~2026.03) 키움투자자산운용 리테일연금마케팅1팀 (2018.11~2023.04) 칸서스자산운용 마케팅팀 (2016.08~2018.11) 골든키자산운용 경영관리팀 (2014.06~2015.11)

다. 운용부서 이력(징계 이력: 없음)

성명	직위(직책)	주요 경력
남두우	공동대표	라이프자산운용 공동대표 (2021.06~현재) 다름자산운용 대표이사 (2018.09~2021.06) 교보증권 부산지점장 (2002.09~2012.10) NH투자증권 동래지점 (1998.10~2002.09) 교보증권 부산지점 (1995.05~1998.10)
강대권	공동대표	라이프자산운용 공동대표 (2021.06~현재) 유경PSG자산운용 CIO (2014.02~2021.02)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2007.12~2014.02)

성명	직위(직책)	주요 경력
이대상	상무 (운용1본부 본부장)	라이프자산운용 운용1본부 본부장 (2021.06~현재) 유경PSG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2018.06~2021.05) 브레인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2014.11~2018.05) 대신증권 주식운용본부 (2009.12~2014.11) 현대차증권 주식운용본부 (2008.06~2009.12) 지안리서치 리서치본부 (2007.05~2008.06) 와이즈에프앤 기획운용본부 (2005.03~2007.05)
배문성	이사 (운용1본부 글로벌리서치팀 팀장)	라이프자산운용 운용1본부 글로벌리서치팀 팀장 (2023.06~현재)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2021.11~2023.05) 한국수출입은행 해양금융단 (2015.10~2021.11) 한국기업평가 기업평가본부 (2008.06~2015.10)
박주홍	부장 (운용1본부 인게이지먼트팀 팀장)	라이프자산운용 운용1본부 인게이지먼트팀 팀장 (2025.08~현재) 현대차증권 법무팀 (2023.04~2025.08) 인마크자산운용 실물투자본부 (2022.03~2023.03) 멀티에셋자산운용 컴플라이언스팀 (2021.02~2022.03) HDC현대산업개발 법무감사팀 (2018.10~2021.01) 법무법인 충정 금융팀 (2016.05~2018.10)
김민선	차장 (운용1본부 에쿼티리서치팀 팀장)	라이프자산운용 운용1본부 에쿼티리서치팀 팀장 (2025.08~현재) 한국투자신탁운용 주식리서치부/ESG운용부 (2022.06~2025.07)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18.07~2022.06)
김수산나	차장 (운용1본부 솔루션팀 팀장)	라이프자산운용 운용1본부 솔루션팀 팀장 (2025.05~현재) 코람코자산운용 멀티에셋운용본부 (2022.06~2025.05) 유경PSG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2017.01~2022.06) KDB대우증권 리서치본부 (2016.09~2016.12)
이시우	상무 (운용2본부 본부장)	라이프자산운용 운용2본부 본부장 (2022.03~현재) IBK투자증권 기업금융본부 (2015.03~2022.02) 한울회계법인 국제사업본부 (2012.02~2014.12)

성명	직위(직책)	주요 경력
박지환	이사 (운용2본부)	라이프자산운용 운용2본부 (2026.06~현재) 케이씨 운영실 (2021.07~2026.05) 파크시스템스 글로벌TS (2018.03~2021.07) 유진테크 해외영업 (2017.02~2017.06) ASML Korea Customer Support (2014.08~2017.01)
김세람	부장 (운용2본부)	라이프자산운용 운용2본부 (2024.04~현재) 신한투자증권 IPO1부 (2019.12~2024.04) 삼정회계법인 감사본부 (2016.07~2019.11)
신현성	부장 (운용2본부)	라이프자산운용 운용2본부 (2025.08~현재) 한국투자증권 IB본부/기업금융2부 (2017.09~2025.08)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2014.10~2017.09)
이재민	차장 (운용2본부)	라이프자산운용 운용2본부 (2024.04~현재) 링크인베스트먼트 운용본부 (2021.07~2024.03) 코어자산운용 운용본부 (2019.02~2021.06) 브레인자산운용 AI운용본부 (2013.06~2019.01)

* 차장 직급 이상의 운용부서 구성원을 기재함.

라. 금감원 제재 내역

일자	위규 사항	징계 내역
2024-07-16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공동업무집행원 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나, 사후보고한 건	1) 기관: 과태료 1,200만원 2) 개인: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주의상당) 1명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해당사항 없음

나. 재무상태표

해당사항 없음

다. 손익계산서

해당사항 없음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기준)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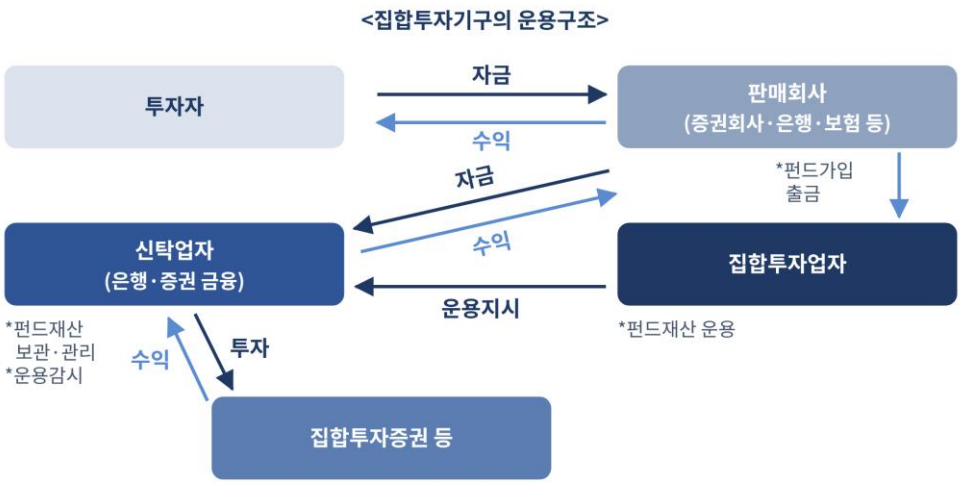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해당사항 없음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 등)에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한 금전 등을 납입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해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고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금전 등을 납입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판매회사에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신탁업자가 보관/관리하고 있는 투자신탁재산을 증권 등에 투자하도록 운용지시합니다. 투자자(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한 운용결과에 대해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구분	내용
회사명	라이프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wo IFC 14층 (연락처 T. 02-6105-7070, 인터넷 홈페이지 www.investlife.com)
회사연혁	2018. 9 회사설립(다름에셋 주식회사) 2019.12 금융투자업(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2021. 6 라이프자산운용 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2022. 4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 2026. 7 공모 집합투자업 인가
자본금	26억원
주요주주현황	㈜보이저홀딩스 100%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	해당사항 없음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해지/투자신탁의 운용·운용지시/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2)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감사보고서 기준; 단위: 백만원)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FY 2025 2025.12.31	FY 2024 2024.12.31	계정과목	FY 2025 2025.1~2025.12	FY 2024 2024.1~2024.12
현금 등	24,491	12,315	영업수익	70,315	24,698
유가증권	50,478	15,184	영업비용	36,209	11,382
유·무형자산	1,945	1,637	**영업이익**	**34,106**	**13,316**
기타자산	63	245	영업외수익	5	117
자산총계	**76,976**	**29,381**	영업외비용	449	7
차입부채	-	-	법인세차감전이익	33,662	13,426
기타부채	29,091	7,890	**당기순이익**	**26,470**	**10,808**
부채총계	**29,091**	**7,890**			
자본금	2,600	2,600			
자본잉여금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FY 2025 2025.12.31	FY 2024 2024.12.31	계정과목	FY 2025 2025.1~2025.12	FY 2024 2024.1~2024.12
이익잉여금	45,286	18,890			
자본총계	**47,886**	**21,490**			

(주) 유가증권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및 종속·관계기업투자, 유·무형자산은 유형자산·사용권자산·무형자산을 합산한 금액이며, 백만원 미만 단수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 운용자산 규모 (2026.10.15. 기준 / 단위: 억원, 금융투자협회 공시 기준)

구분	증권					단기금융	파생형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합계
	주식	혼합주식	혼합채권	채권	재간접						
수탁고	6,459	898	2,239	-	-	-	535	-	-	32,934	**43,064**

(주) 집합투자기구 유형별 순자산(수탁고) 기준이며, 투자일임재산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개요

구분	내용
회사명	미래에셋증권㈜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26 (수하동, 미래에셋센터원빌딩), 1588-6800
회사연혁	1970.09 동양증권 설립 1975.09 유가증권시장 기업공개 1983.10 대우증권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2011.11 유상증자(자기자본 3조원) 2016.05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2021.03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홈페이지 참조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2) 주요업무

가)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나)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다)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라)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마)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바)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사)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아)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의무

가) 신탁업자가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구분	내용
회사명	KB펀드파트너스 주식회사

구분	내용
주소·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여의도동) (연락처 T. 02-2059-1387,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kbfps.com)
회사연혁	2000.11 KB국민은행의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2007.10 고객용 WEB시스템 신규개발 2009.0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무관리 업무 수행 2010.10 기준가격 검증MODEL 개발 2016.11 1차 차세대시스템(FundStar) 오픈 2018.05 우정사업본부(보험)업무 수행 2018.06 수탁고 100조 돌파 2020.08 한국투자신탁운용 수임 2020.09 수탁고 250조 돌파 2020.10 2차 차세대시스템(FundStar) 오픈 2022.09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수임 2023.01 KB 라이프 생명 수임 2024.06 KB펀드파트너스(신설법인) 설립 2025.04 ETF 시스템 오픈 2025.05 CBRE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유치 2025.10 수탁고 400조 돌파 2025.10 (기관/개인) 직접판매시스템 오픈

2)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의무와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회사연혁 등(홈페이지 참조)
KIS자산평가(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02-3215-1400)	www.bond.co.kr
나이스피앤아이(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11 (02-398-3900)	www.nicepni.com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종류 집합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등은 아래의 수익자총회의 소집 절차를 준용합니다. 다만, 종류집합투자자총회의 운용비용은 그 종류집합투자기구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가) 수익자총회의 소집

①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②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③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②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합니다)한 것으로 봅니다.

ㄱ) 수익자에게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ㄴ)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ㄷ)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ㄹ)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③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연기수익자총회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②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④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법 제190조제6항의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및 간주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가)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나)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라)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마)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사)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아)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자) 투자신탁의 합병(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제외)

차)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아래 기술된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보수 미지급 가능 사유	1.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서·투자설명서에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3.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변경에 동의한 경우
보수 지급 기준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시행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합니다. 1. 대상기간: 변경시행일로부터 1년간. 다만, 변경시행일로부터 잔여 신탁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2. 대상금액: 신탁계약서 제37조제3항에 따른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에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에 제1호의 대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법률자문비용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별도로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합니다.}

4) 투자신탁의 합병

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나)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5) 반대매수 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가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 청구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1)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집합투자재산명세서

나)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다)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라)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3)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4) 집합투자업자는 결산서류, 회계감사보고서 및 수익자총회 의사록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판매회사에게 이를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수익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비치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1)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으로 정한 자를 말합니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 이 상품의 신탁계약서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 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아래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공

시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익자는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법상 의무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승인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①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②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이 임의로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춰 판매회사 등을 통해 수익자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가)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②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③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④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나)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②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③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2) 자산운용보고서

가)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①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②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③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④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⑤ 그 밖에 법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다)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②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③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④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지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또는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나)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다)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라) 법 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마) 법시행령 제27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4) 기타 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 변경에 관한 공시

가)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④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⑥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⑦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⑧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www.investlife.com)·판매회사 및 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된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합니다)

나)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다) 법시행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라)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마)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바)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아)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합니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자)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차)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①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②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③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①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②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위험지표의 공시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분	평가주기	중개회사 선정기준
국내상장 지분증권	분기별 1회 이상	마케팅력(50%), 리서치자료(30%), 매매체결능력(20%)
채무증권	분기별 1회 이상	리서치(50%), 매매체결능력(30%), 중개사RISK(20%)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가. 의무 고유재산 투자

구분	내용
투자주체	라이프자산운용
투자목적	고유재산 투자를 통한 운용에 대한 책임성 제고
투자승인일자	2026년 10월 6일
투자집행시기	최초설정일
투자금액	2억원
투자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간
투자기간 경과전 투자금회수 가능 요건	①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존속기한이 3년 미만인 집합투자기구로서 고유재산 투자금을 존속기한 동안 유지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후 3년 이내에 법 제19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02조제1항 또는 제221조제1항에 따라 해지·해산하는 경우 ③ 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후 3년 이내에 다른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로 편입되거나 영 제245조제5항에 따라 다른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는 경우 ④ 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후 3년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된 경우로서 변경된 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 투자금을 출자·납입하여 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후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투자금 회수방법	①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회수할 것. 다만, 고유재산 투자금이 집합투자기구 원본액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분할하여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② 1회에 회수하는 금액은 고유재산 투자금의 100분의 50 이하로 하고, 1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 다음 회차의 투자금을 회수할 것 ③ 회수결과를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고 자산운용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것

나. 추가 고유재산 투자

구분	내용
투자주체	라이프자산운용
투자목적	고유재산의 운용 효율을 도모하고 운용실적(Track record)을 축적하고자 함
투자승인일자	2026년 10월 6일
투자집행시기	최초설정일
투자금액	30억원
투자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간
투자금 회수방법	투자기간(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 이후 투자목적 달성 여부와 시장상황을 감안하되, 펀드의 운용안정성 및 수익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회수 시점의 투자금이 펀드 수탁고의 3%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에 회수할 수 있으며, 당사 내부규정 또는 내부 사정에 따라 회수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주1) 투자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투자금 회수에 대한 내용을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여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2) 나. 추가 고유재산 투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투자금액(2억원) 외에 추가로 투자하는 고유재산입니다.

(주3) 당사는 상기와 같이 투자기간 및 회수계획을 정하고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고유재산을 투자함으로써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고유재산을 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4) 집합투자증권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 투자를 행하는 것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성과에 대한 보장이나 확신을 의미하지 않으며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등을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집합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로서 그 방법 및 절차는 관련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